

문의 안내 :

문서번호 : 기금관리 -
가산금과 증가산금
납부기한 경과시 부과액의 3% 가산금 부과되며, 체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매1개월 경과시마다(최대6개월) 증가산금이 1.2%씩 추가됩니다. ※ 계산식 : 부과금액+가산금(부과금액의 3%)+증가산금 (부과금액×1.2%×경과월수)

OCR	독촉장 ·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 (고객용)				
지로번호	7001293				
통지번호					
성명(명칭)					
전용목적					
전용농지					
납부금액	부과금액	가산금	증가산금	합계	납부기한
					까지

가상계좌

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()의
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

안내 말씀

1.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됩니다.
2. 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「농지법」 제38조제11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.
3.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.
4.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허가청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

금융결제원 승인 제		독촉장 · 체납고지서(금융기관용)	
45848호			
OCR	지 로 번 호	7001293	금 액
		원	
지로번호	고객조회번호	C	금액
		C	Code
() * 이 종이는 컴퓨터 처리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()를 사용하여 주십시오.			
통지번호			
성명(명칭)			
전용농지			
전용목적			
납부금액	부과금액	가산금	증가산금
			합계
			납부기한
			까지

가상계좌

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

이
구
도

(수 납 인